1인가구 지원제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지원제도]

이 콘텐츠에서는 혼자서 생활하는 1인가구에게 필요한 생활법령과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분야에서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관련 법령정보와 주택, 이사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안전(범죄 예방) 분야에서는 안전귀가와 주거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공하며, 건강돌봄 분야에서는 건강검진 및 동행 서비스, 심리상담,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제도 1
1. 1인가구 4
1.1. 1인가구 지원 4
1.1.1. 1인가구 현황 및 지원정책 4
2. 주거 6
2.1. 주거 유형 6
2.1.1. 주택 구입(매매) 6
2.1.2.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 7
2.2. 주거 지원 10
2.2.1. 주택 지원 10
2.2.2. 주거 금융지원 15
2.3. 주거 이전 및 생활 18
2.3.1. 이사 및 주택관리 18
3. 안전(범죄 예방) 23
3.1. 귀가 안전 지원 23
3.1.1.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23
3.2. 주거 안전 지원 25
3.2.1. 안심홈세트 지원 및 무인택배함 설치 25
4. 건강·돌봄 29
4.1. 건강 지원 29
4.1.1. 건강검진 및 동행서비스 29
4.1.2. 심리상담 30
4.1.3. 식생활 지원 33
4.2. 돌봄 지원 34
4.2.1. 고독사 및 외로움 방지 34

1. 1인가구

1.1. 1인가구 지원

1.1.1. 1인가구 현황 및 지원정책

1인가구의 증가

가족의 대표적인 형태

▪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

▪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36.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국가데이터처, 2025), 7쪽 참조].

▪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배우자 사망, 학업이나 직장(취업), 혼자살고 싶어서, 본인 이혼"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 이하는 학업이나 직장(취업), 50대는 본인 이혼, 60대 이상은 배우자 사망으로 1인가구가 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연구」(성평등가족부, 2023), 472쪽 참조].

1인가구 특징

▪ 1인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취약합니다(「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2쪽, 23쪽, 28쪽 및 「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연구」 485쪽 참조).

▹ 2024년 기준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원으로 전체 가구(7,427만원)의 46.1% 수준이며, 1인가구 10가구 중 약 4가구는 연소득이 3천만원 미만임. 또한, 2024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74.2%는 1인가구이며, 그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기준 1인가구의 생활상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의 어려움(42.6%)"이 가장 높았으며, "질병 및 위급 시 대처의 어려움(37.6%)"이 두번째로 높았음. 특히, "질병 및 위급 시 대처"와 "고립 및 고독"의 문제는 2000년과 대비하여 3년 사이 비교적 큰폭으로 증가했음

1인가구 지원정책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실태조사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1항).

▪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2항).

▪ 2023년 1인가구 지원 정책 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높았고,"② 돌봄 서비스 지원"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심리정서적 지원, 가사 서비스 지원, 건강 증진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나타습니다(「2023년 제5차 가족실태조사 연구」 494쪽 참조).

▹ 특히, 1인가구가 원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① 전세자금 대출 지원, ② 월세 보조금 지원, ③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순입니다(「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16쪽 참조).

1인가구 지원정책

▪ 정부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1인가구 비중의 가파른 증가에도 여전히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서울연구원, 2022), 12쪽 참조].

√ 주거 영역에서는 1인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이 다인가구에 비해 높고 공유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새로운 주거모델 활성화 추진

√ 안전 영역에서는 치안과 방범을 강화하고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부각되는 1인가구를 위해 사회적 관계망 사업을 활성화

▹ 광역자치단체는 1인가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 중입니다(『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15-16쪽 참조).

※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 저는 서울시 용산구에서 1인가구로 거주 중입니다.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서울시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s://www.yongsan.go.kr)-분야별 정보-복지 1인가구 지원 서비스>에서 확인하시거나 해당 1인가구 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1인가구 포털인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1인가구를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정책과 참여 프로그램 등 1인가구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용산구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1인가구 특징 및 희망 지원정책을 참조하여 1인가구에게 필요한 법령정보와 지원제도를 ① 주거, ② 안전(범죄예방), ③ 건강·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2. 주거

2.1. 주거 유형

2.1.1. 주택 구입(매매)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등기부상 확인사항

▪ 법원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자 및 권리사항을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을 통해 구조와 면적을 확인하고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파악하여 추후 분쟁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토지의 고유번호,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야 합니다.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건물의 구조, 용도, 종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주택 구입 전, 아래의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세요!>
>
>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 ※ 세움터 건축물대장(https://cloud.eais.go.kr) 열람
>
> ※ 정부24(www.gov.kr) 건축물대장 열람
>
> ※ 정부24(www.gov.kr) 토지대장 열람
>
> ※ 정부24(www.gov.kr)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출처: 마이홈(www.myhome.go.kr) 알려드려요 부동산 상식 주택구입 거래 참조]

매매계약 절차

① 매매계약서 작성

▪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시 중개업자가 작성한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와 계약 직전에 교부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후 실소유주(등기명의인)와 계약해야 합니다.

② 매매대금 지급

▪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제1항 및 제583조).

③ 중개수수료 지급하기

▪ 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④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본문 참조).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을 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⑤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

▪ 매수인 및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⑥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항, 제150조제1호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

※ 그 밖에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내 집을 마련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3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4항 참조>

2.1.2.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으세요< 출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 1) 참고 >.

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법무부(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주택임대차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지방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현황은 관할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에 대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구(자치구를 말함)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3항 참조).

주택임대차계약기간 중 확인사항

계약갱신시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 1) 참조 >.

① 차임(임차료) 증액 청구

▹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② 묵시적 갱신 등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 기존 규정은 1개월이었으나,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 참조).

③ 계약갱신요구 등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거절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 2에 게재된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별지 2) 참조).

※ 기존 규정은 1개월이었으나,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나머지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참조).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 중 1회로 한정되어 인정되는 갱신요구권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받기

▪ 세액공제의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

▪ 공제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별도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에 따른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의 경우에는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

▹ 월세에 대한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

> **Q. 주택을 임차하면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
> **A.** 네. 가능합니다.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요청

임대인이 가맹점이 아닌 경우 ´현금거래확인신고´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②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임대기간 동안 매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홈텍스-이용정보-현금영수증-자주묻는 Q&A 참조 >

※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주거 지원

2.2.1. 주택 지원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공공분양주택

▪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며,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및 마이홈(www.myhome.go.kr)-주거복지 안내-공공분양 참조].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분양임대정보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구 분	개 념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가족형태의 변화로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입학·복학 예정 등)	건설형 대학생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일반공급)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 재임대 및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무이자로 지원
영구 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 임대주택(50년)	06년 이후 공급 중단
국민 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
장기전세주택 (Shift)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을 거주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공급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 등으로 살던 집이 철거되어 보금자리를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공급하는 임대주택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
원룸매입 임대주택	1~2인 가구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매입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재건축 소형주택	재건축 용적률완화로 건립하는 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공공목적을 가진 주민이 협동조합 구성하여 건설
외국인임대	*현재 신규 공급하지 않음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54~59쪽 참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참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구 분	개 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민간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SH 또는 리츠에서 매입하여 최장 30년에서 40년간 토지임대 등
공동체주택	민간이 SH토지를 장기임대하여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에서 토지매입 후 공동주택 형태로 임대하는 주택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60쪽 참조)

※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1인가구와 밀접한 청년과 노인에게 지원하는 주택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청년주거 지원

행복주택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행복주택의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10년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및 별표 5 제3호가목).

※ 입주자별 최대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

구 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 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공급 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 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40㎡ 이하

[마이홈(www.myhome.go.kr) -임대주택-행복주택 참조]

그 밖의 청년주거 지원

▪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청년전세임대, 주거안정 월세대출, 공공 기숙사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관련 링크
청년 전세임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	마이홈포털 전세임대주택
		LH 청약센터
		LH 전월세 지원센터
		SH공사 희망하우징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자금을 저리로 대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마이홈포털-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리은행 영업점 안내
행복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 건립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징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SH공사 희망하우징

[마이홈(www.myhome.go.kr)-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 참조]

노인주거 지원

노인복지주택

▪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인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입소절차

▪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후단).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상 연령이 많은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4. 다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 24세 미만의 자녀손자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24세 이상의 자녀손자녀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노인복지』 콘텐츠의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함께 모여 살기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세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

▪ “홀몸어르신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인 만 65세 이상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금천구 보린주택, 은평구 은빛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주택플랫폼(soco.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수요맞춤형 공동체 주택 참조 >.

▪ “의료안심주택”은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서울시의 경우 중랑구 신내의료안심주택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www.i-sh.c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주거 정책 공공임대주택 수요맞춤형 의료안심주택 및 SH 서울주택공사(www.i-sh.co.kr) 주거복지사업 맞춤형 공동체 주택 참조 >.

Q. 지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른데요. 이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네, 지역별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분	홈페이지 주소	구분	홈페이지 주소
SH서울주택도시공사	i-sh.co.kr	전북개발공사	jbdc.co.kr
인천도시공사	ih.co.kr	대구도시개발공사	dudc.or.kr
대전도시공사	dcco.kr	울산도시공사	umca.co.kr
경기주택도시공사	gh.or.kr	전남개발공사	jndc.co.kr
충북개발공사	cb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pdc.co.kr
경상북도개발공사	gbdc.co.kr	경남개발공사	gndc.co.kr
충남개발공사	cndc.kr	BMC부산도시공사	bmc.busan.kr
광주도시공사	gmcc.co.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출처: 서울주거상담(www.seoulhousing.kr)-나눔과정보-자주 묻는질문-공공임대주택 참조]

2.2.2. 주거 금융지원

주택 구입 자금대출

주택 구입 자금 지원

▪ 정부는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돕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참조).

구분		내용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
공유형 모기지	수익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손익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수익&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상품
오피스텔구입자금		근로자 및 서민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대출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고정대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 대출

< 출처: 마이홈(https://www.myhome.go.kr)-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제도-금융지원-관련상품안내 및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참조 >

주택 전세·월세자금 대출

전세·월세자금 대출 지원

▪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다음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출처: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 참조 >

※ 전세·월세자금 대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금융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 "1인가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의 지원기준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관련 기관 및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주거 금융지원

구분	내용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거비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7천만원 임차보증금 대출 알선 및 연 2% 이자 지원
청년 월세지원사업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월세를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로 4,50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연 2%로 최대 1천만원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9~11쪽, 28쪽 참조)

▪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광주청년 정책플랫폼(www.youth.gwangju.go.kr) 광주청년정책 정책 맞춤검색 및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tal.kr) 청년정책-청년정책검색-맞춤형검색-주거·복지·문화 참조].

Q. 전세나 월세를 얻는데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상품이 있나요?

A. 주택전세·월세자금대출상품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대출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1)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 개인상품 – 주택전세자금대출 참조>

2.3. 주거 이전 및 생활

2.3.1. 이사 및 주택관리

※ 이사화물 표준약관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35호, 2014. 9. 19. 발령·시행)]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이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당사자 간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사업체와 계약

이사방법 결정

▪ 이사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우선 어떤 방법으로 이사할지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이사방법에는 일반이사, 포장이사 및 보관이사가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2조제2항).

구분	내용
일반이사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이사업체는 이사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
포장이사	이사하려는 사람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이사업체에게 의뢰하여 이사업체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아서 하는 이사
보관이사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업체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

사업자에 견적 의뢰

▪ 이사비용은 운송거리, 이사물량, 작업조건, 부대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이사날짜에 따라 높게 책정되거나 낮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 또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 외에도 특수 이송품(고가의 골동품, 대형금고 등), 부피, 층수, 작업여건, 이송거리(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골목)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업체의 방문견적을 받아 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사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자에게 견적을 의뢰하면, 그 사업자는 사업자의 상호, 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운임단가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줍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4조 참조).

사업자 선정 및 이사화물운송계약서의 작성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이삿짐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사화물운송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5조 참조).

이사 계약금 및 운임의 지급

▪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 사업자는 일반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의 인도를 확인한 때, 포장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부를 정리하여 확인한 때에 운임 등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1항).

▪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운임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미리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해 초과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2항).

▪ 사업자는 운임 및 초과운임 이외의 수고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8조제3항).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 이사화물운송계약의 해제

▹ 고객이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제1항).

▪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1항 참조).

분쟁 발생 시 해결방법

▪ 사고증명서의 발행

▹ 고객은 이사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그 멸실·훼손 또는 연착된 날부터 1년간 사고증명서 발행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9조). 따라서 이사 당일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의 직원에게 확인시키고 사고증명서를 받아두고,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사 관련 분쟁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참조).

> ※ 그 밖에 이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이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이사 및 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사 및 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서울에서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어르신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상담부터 집보기 동행까지 같이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이용장소	서울시 25개 자치구
이용료	무료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상담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 대장 확인 등**
	주거지 탐색 지원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지원정책안내 전월세 지원정보 기초안내
	집보기 동행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신청방법	서울시 1인가구 포털(1in.seoul.go.kr) 또는 전화(운영 자치구별 문의)
운영일시	매주 월, 목 13:30 ~ 17:30(주 2회, 공휴일 휴무)

< 출처: 서울특별시 – 분야별정보 – 복지 – 가족복지 1인가구 및 씽글벙글 서울(1in.seoul.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

▪ 임대차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구분	거래금액의 계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주택임대차	전세인 경우: 보증금
	월세인 경우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월 차임액 × 70) + 보증금

▪ 반값 중개 보수 서비스 지원

▪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1인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보수 50%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의 경우 1인가구가 주택 임차 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의 2분의 1을 중개사무소의 재능기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처: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 지원제도 참조 >.

그 밖의 이사 지원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싱글 익스프레스: 1인가구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서초구 거주 1인가구 또는 서울시 내 타구에서 서초구로 전입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포장이사 지원 또는 입주청소 중 하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씽글벙글 서울(1in.seoul.go.kr) 지원제도 및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참조 >.

▪ 청년이사 차량지원(이음이사): 만 19세부터 39세 미만 청년, 서울시 성동구 내에서 이사하고자 하는 청년,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 성동구로 이사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량 이사 차량 지원 및 차량운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씽글벙글 서울(1in.seoul.go.kr) 지원제도 및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참조 >.

> Q. 저는 서울시 광진구로 이사가려는 대학생 1인가구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인하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용하나요?
>
> A. 부동산 계약 전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및 부동산정보과(☎02-450-7743)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 < 출처: 씽글벙글 서울(1in.seoul.go.kr) 지원제도 – [광진구] 1인가구 반값 중개보수서비스 및 광진구청 광진소개 광진소식 보도자료(2022. 2. 17.), 광진구,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사업 확대 운영 참조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 1인가구 시민에게 맞춤형 주택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0%: 2,564,238원
지원내용	√ 신속 생활불편 처리: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주거불편사항 처리 (예시) 형광등·콘센트·손잡이·경첩 교체, 커튼·블라인드·방범창 설치 등 √ 홈케어 서비스: 신속 생활불편 처리로 어려운 경우, 집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소규모 집수리 (예시) 방충망, 창호, 곰팡이, 싱크대, 수전, 변기, 세면대, 방음, 단열, 안전손잡이 √ 클린케어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가구, 저장강박 등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 및 수납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예시) 청소, 방역, 정리수납
신청방법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 출처: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 주거 정책 – 주거복지 사업 –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참조 >

3. 안전(범죄 예방)

3.1. 귀가 안전 지원

3.1.1.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1인가구의 귀갓길이나 주거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에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이용방법
서울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 또는 안심이 앱을 통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신청 ☞ 운영시간: 22:00 ~ 익일 01:00(단, 월요일은 22:00 ~ 24: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부산시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이 심야시간 마을버스 이용 시, 정류소가 아닌 승객이 원하는 지점에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귀가 지원
인천시	안심in 앱을 통해 긴급도움 요청 시 군·구 CCTV 관제센터로 연결, 자녀위치확인, 생활안전(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등) 정보제공 위급상황 시 인천 시내 가까운 편의점(안심지킴이집 마크 부착)으로 들어가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출동 및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경기 (동두천, 의정부, 성남, 안산, 오산, 고양, 안양)	서비스 이용 20분 전 전용 전화로 신청 ※ 시군별 서비스 이용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
제주	심야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제주버스정보시스템 웹(http://bus.jeju.go.kr) 또는 앱(제주버스정보) 이용하여 실시간 버스정보 확인 및 이용
세종	시민안전귀가 모바일 비상벨 앱 '세종안심이' 앱 이용

<출처: 서울특별시(www.seoul.go.kr)-서울소식-서울시 정책 뉴스-”늦은 밤길 나를 지켜주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이앱’(2022-09-23) 등 참조>

Q. 밤에 집까지 가는 길이 어두운 곳이 많아서 평소 겁이 나는데요. 안심귀가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지역마다 서비스 이용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 또는 안심이 앱을 통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www.seoul.go.kr)-서울소식-서울시 정책 뉴스-”늦은 밤길 나를 지켜주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이앱’(2022-09-23) 참조 >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귀가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인하세요.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가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9조 참조).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이 앱

▪ 안심이앱은 자치구 CCTV관제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6만대의 CCTV와 안심이앱을 연계해 안심귀가 관제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구조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안심귀가앱입니다.

▪ 안심이앱은 안심 귀가지원 뿐 아니라 학교폭력, 스토킹, 조난 등 유사 시 긴급구조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심이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안심이’를 검색해 설치 후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www.seoul.go.kr) 서울소식 –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2022. 05. 11.) ‘서울시 ‘안심이앱’ 서비스 모든 시민으로 확대’ 및 씽글벙글 서울 (1inseoul.go.kr) 지원제도 참조 >

여성안심 지킴이집(편의점)

▪ 편의점 안심지킴이가 위급상황 시 무선비상벨이나 무다이얼링(전화기를 내려놓으면 112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 예컨대 지킴이 집에서 신고할 경우, 112신고센터를 통해 인근 경찰서, 지구대, 순찰차량에 ‘여성안심지킴이집 ○○점, 주소, 연락처’ 가 바로 확인되며 즉각 출동이 가능합니다.



<여성안심지킴이 집 긴급지원 시스템>

< 출처: 서울특별시(www.seoul.go.kr) 서울소식 –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2014. 08. 21.) ‘밤길 위험 느끼면 서울시-편의점 여성안심지킴이집으로’ 및 씽글벙글 서울(1inseoul.go.kr) 지원제도 참조 >

안심마을보안관

▪ 안심마을보안관은 심야시간(평일 22시~익일 2시30분) 2인1조로 구성된 보안관이 동네 골목 곳곳을 누비며 위급상황이

일어나진 않는지 범죄가 발생하진 않는지 순찰하는 지킴이 활동을 말합니다.

▪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은 25개 자치구별 1개소씩 총 25개소(시민 추천 7개소, 자치구 신청 18개소)입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www.seoul.go.kr) 분야별정보 지역사회복지소식(2024. 08. 29.) '서울시 안심마을 보안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참고 >

스마트보안등

▪ 골목의 노후 보안등을 사물인터넷 신호기가 부착된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안심이앱과 연계된 스마트보안등은 앱을 켜고 보안등 주변에 접근하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진다. 긴급 상황 시에는 보안등이 깜빡이면서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상황이 실시간 전송되어 자치구 관제요원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www.seoul.go.kr) 서울소식 –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2022. 01. 26.) '서울시, 시민이 원하는 곳에 안심마을보안관 및 스마트보안등 설치' 참고 >

3.2. 주거 안전 지원

3.2.1. 안심홈세트 지원 및 무인택배함 설치

각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의 주거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1인가구에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9조제3호 참조).

※서울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 – '이중잠금장치, 비상벨···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6월 신청'(2021. 05. 24.) 및 대전광역시 – 행정정보 Story대전 '모두가 상생! 1인가구 지원본격 추진'(2022. 04. 20.) 참조 >.

▪ 서울시의 경우,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물품	내용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
휴대용 긴급벨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 비상상황을 알림
창문잠금장치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

▪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안심홈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대상 및 내용이 다릅니다. 영등포구의 안심홈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영등포구 거주 여성 1인가구 영등포구 거주 법정 한부모가정(여성 구성원이 있어야 함) 범죄피해자(남성 가능) ※ 전월세 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자가, 아파트 불가)
지원내용	방범용품 무료 설치 및 제공  
신청방법	신청서 QR코드 구글폼 작성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내방 신청

< 출처: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 지원제도 영등포구 안심홈지원사업 참조 >

▪ 대구광역시의 경우 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세이프홈 지원사업”이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군, 대구경찰청과 직접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 취약 가구에 스마트 초인종, 문열림 센서, 가정용CCTV 등 안심홈 세트를 지원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입니다.

※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구·군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출처: 대구광역시 뉴스룸(https://info.daegu.go.kr) 보도자료(2022. 09. 20.),‘대구 치안, 안심 홈세트 지원으로 더 안전하고 촘촘하게 만든다’참조>.

1인가구 안전도어 지킴이

▪ 다인가구에 비해 주거침입 등의 범죄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의 안전한 삶을 위해 도어카메라와 긴급출동서비스를 결합한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1인가구
지원내용	보안기기 설치 √전용 앱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든 현관 앞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고,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대화 가능 √동작감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 문 앞 배회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받을 수 있음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전용 앱 또는 SOS비상버튼으로 긴급출동 요청이 가능 √이상신호 감지 또는 출동요청 시, 최단거리에 있는 출동대원이 신속히 출동
	월이용료 지원 √시중가 월 18,750원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월 9,900원에 3년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신청방법	각 자치구 담당자 이메일, 1인가구 포털, 방문

< 출처: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 알림마당 – 알쓸1잡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신청 안내 참조 >

무인택배함

▪ 무인택배 보관함을 설치하여 여성 1인가구가 안심하고 택배를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뿐만아니라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관내 여성 1인 가구
사용 방법	① 물품수령 장소주소 확인, 택배함 지정 안심택배함 주소로 배송지 기재 주소 끝부분에 '안심택배함' 기재
	② 지정된 택배함에 물품 배송, 해당 물품의 배송일시와 인증번호를 수령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
	③ 택배도착 알림문자 받은 시민은 보관함에서 본인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 후 물품 수령

< 출처: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 지원제도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 안내 참조 >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1인가구 및 범죄취약가구 자가 내 범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

▪ 경기도의 경우, 1인가구 증가에 따른 1인가구 및 범죄취약가구의 가구 내 범죄 및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구 내 비상벨 설치 및 긴급구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에 대해 실증 테스트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안심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제5호 참조).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내 거주자 * 추후 경기도 전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
지원내용	스마트폰 기반의 사용자 어플(경기안심앱), 블루투스 기반 고정형 비상벨 1종
	자가 내 비상벨 설치 지원, 긴급대응 지원 등
더 알아보기	경기안심벨(https://modubell.com)

< 출처: 경기도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 경기도민 복지 가족·다문화 –1 인가구 지원사업 참조 >

※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정보는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건강·돌봄

4.1. 건강 지원

4.1.1. 건강검진 및 동행서비스

건강검진 받기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일반건강검진의 실시

▪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제1항].

> ※ 그 밖에 건강검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콘텐츠 및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 65세 이상의 노인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7조제1항 전단,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 ※ 그 밖에 노인 건강진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노인복지』 콘텐츠의 < 건강지키기 – 내 건강 미리 챙기기 –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아플 때 병원 동행부터 입·퇴원까지 지원해주고, 퇴원 후 일상 회복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9조제2호 참조).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하지만 돌봐줄 가족, 지인이 없는 나홀로족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나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입니다.

▪ 소득 조회 등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당일 예약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1인가구 및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
신청방법	콜센터(☎ 1533-1179) 또는 홈페이지(www.seoul1in.co.kr)
서비스 이용료	시간당 5,000원(30분 초과될 때마다 2,500원 추가)
	주중(평일) 07~20시
	주말 09~18시 (사전 예약시만 가능)

※ 교통비 등 이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비, 버스비 등 서비스 이용자의 교통비는 본인 부담

< 출처: 서울특별시(http://seoul.go.kr) 분야별정보 – 복지 – 가족복지 1인가구 참조 >

Q. 출근 준비하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쳐서 병원에 급하게 갈 일이 있었는데 혼자 살다 보니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난감했어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당일 신청해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는 당일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옵니다.

< 서울특별시(seoul.go.kr) 분야별정보 – 복지 – 가족복지 1인가구 참조 >

4.1.2. 심리상담

1인가구의 외로움과 정서적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심리지원 사업 실시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가구의 비중이 많아짐에 따라 1인가구 심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는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http://www.is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심리정서지원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거주 1인가구 여성
장소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소요비용	인천광역시 1인가구라면 비용 없음

▪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누구나를 대상으로

1인가구 생활상의 문제, 자신에 대한 이해, 가족 및 대인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해결과 정서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 상승 등을 위해 개인 및 집단상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 심리상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상담

구분	내용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서비스내용	최대 7회기(1회기 50분)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마음을 돌아보세요
추가정보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

< 출처: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금융·복지-건강지원 참조 >

※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청년취업지원』 콘텐츠의 <취업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심리상담, 단기집단상담 지원>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검진 지원

▪ 서울시의 경우 만 19세 이상인 서울시민에게 마음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사해보세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해당 의료기관 1년동안 미방문자)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내용	√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기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비용 지원(3회차까지 지원) √검진 및 상담시 발생되는 비용 및 본인부담금 1인당 8만원까지 지원 √1차 방문: 우울등 선별검사 및 평가, 2~3차 방문: 결과에 따른 추가 상담
추가정보	참여의료기관 보기(https://blutouch.net/service/exam) 서울시 해당 구 보건소로 문의

< 출처: 블루터치(https://blutouch.net)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 심리지원 마음건강검진 참조 >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우울 검사를 통해 나의 마음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이용방법	√거주하는 자치구에 위치한 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우울 검사 진행 √결과에 따라 보건소 등 마음건강상담 연계
추가정보	참여 병·의원 목록 확인(http://www.suicide.or.kr/#campaign) 서울시자살예방센터(02-3458-1062)로 문의

< 출처: 블루터치(https://blutouch.net)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심리지원 –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및 씽글벙글 서울 – 심리상담 참조 >

마음안심버스

▪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편견해소를 위해 정신건강 정보제공, 스트레스 측정, 마음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내용	√스트레스 측정 및 상담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기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정신건강척도검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
이용방법	√거주하는 자치구에 위치한 동네 병·의원에 방문해 우울 검사 진행 √결과에 따라 보건소 등 마음건강상담 연계
추가정보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팀(02-3444-9934/내선284)로 문의

< 출처: 블루터치(https://blutouch.net)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참조 >

경기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 전화 등을 활용하여 중장년이 겪는 갈등, 우울, 관계 향상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제2호 참조).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장년(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1인가구
지원내용	전화 심리상담, 사례관리 √심리·정서지원 전화 심리상담 √사례관리: 주 1~2회 전화 심리정서 지원,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정보 제공 등 √심리방역 문제메시지(온마음편지) 제공, 심리검사 √마음돌봄 프로그램(마음돌봄 특강, 집단상담 등)
수행기관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중장년 상담팀

< 출처: 경기도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 경기도민 복지 – 가족·다문화 1인가구 지원사업 참조 >

※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정보는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3. 식생활 지원

1인가구의 규칙적이고, 균형잡힌 식사를 위한 식생활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의 불규칙적이고 불균형한 식사를 개선하기 위해 식생활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경우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가 모여 공동으로 조리 및 식사하고, 골고루 영양소를 갖춘 요리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제2호 참조).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및 경기도 내 실거주 1인가구	
지원내용	식생활 개선 및 1인가구 간 연계를 위한 공동조리·식사 요리교실 운영	
운영예시	청년기	식기 공예 / 한그릇 요리 / 디저트 요리
	중장년기	체질 탐색 / 재료 탐구 / 요리교실
	노년기	식단 교육 / 밀키트 / 공동 조리(밑반찬) / 반찬 공유 및 공동식사

< 출처: 경기도(www.gg.go.kr) 분야별 정보 경기도민 복지-가족·다문화 1인가구 지원사업 참조 >

1인가구 공동체 지원

▪ 1인가구의 사회적 단절을 완화하고 정서적 유대감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공동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인가구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경우, '공유부엌'이라는 사업을 통해 혼밥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9조제2호 참조).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장년층 1인가구 15개 공동체 ※ 만 40~64세 중장년층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단체
지원금액	공동체당 4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혼밥' 개선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위한 1인가구 공동체 지원
	지역 내 조리시설 등과 연계한 공유부엌·요리교실·식사프로그램등 지원 식사 및 공동체 여가문화 등 연계추진지원
더 알아보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https://ggmaeul.or.kr)

< 출처: 경기도(www.gg.go.kr) 분야별 정보 경기도민 복지-가족·다문화 1인가구 지원사업 참조 >

▪ 서울시의 경우, 중장년 1인가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9조제5호 참조).

※ 제철・건강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요리를 만들어보는 '요리교실'과 농촌체험활동 같이 각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부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혼밥은 그만" 중장년 1인가구, 함께 요리하며 건강 챙긴다(2022. 4. 6.) 참조>.

> ※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정보는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돌봄 지원

4.2.1. 고독사 및 외로움 방지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1인가구의 고독사 문제 대두

▪ 최근 우리나라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독사에 노출된 위험계층이 사망 전 호소한 어려움(고독사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1), 61면 참조].

- 건강 문제(암, 투석, 장애 등).
- 경제적 어려움(부채, 생계 곤란)

- 단절과 거부로 인한 어려움(서비스 거부, 치료 거부 등)
- 생활관리(냄새 등)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위와 같은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독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정신건강돌봄(우울증·고독사)』 콘텐츠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알아볼까요?>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의 고립감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9조제2호 참조). 그 밖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부확인을 위한 서울살피미 앱 지원

▪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안부확인 필요한 대상자의 스마트폰에 서울살피미 앱 설치하여 안부확인을 합니다. 6~72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지정된 보호자등에게 위기 신호 알림문자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 출처: 서울시 광진구 1인가구 사업목록 및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시민기자 뉴스 '1인 가구 살뜰히 살펴주는 ´서울살피미´ 앱 설치하세요!'(2021. 7. 29) 참조) >.

홀몸어르신 살피미 서비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독거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입주민 주거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홀몸어르신 살피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홀로 사는 어르신의 생활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부전화, 방문하여 말동무 되기 등 살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출처: LH 주요사업 주거복지사업 주거생활서비스 및 LH, 무지개서비스 이용 가이드, 17쪽 참조 >.

AI 생활관리서비스

▪ 인공지능(AI)이 주기적으로(주2회) 전화를 걸어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등 안부를 챙기고 운동, 독서 등 취미생활이나 바깥 활동 같은 일상생활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또한, 대화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징후가 발견될 경우엔 자치구 공무원들이 대상자의 상태를 즉각 확인하고, 유관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합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중구 등 총 6개 자치구입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www.seoul.go.kr) 서울소식 보도·해명자료 보도자료(2022. 4. 18.) '서울시, 중장년 1인가구의 말동무 ´인공지능(AI) 생활관리서비스´…4월부터 시행' 참조 >

1인가구의 정서적인 안정감 등을 위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할 때 주의사항

▪ 반려동물 입양 또는 분양 시 주의사항

▹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만 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일정한 준수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곳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제39조).

▪ 반려동물 등록하기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본문).

> ※ 등록대상동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 ①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동물생산업자"라 함)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
>
> ②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 ③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단독주택은 제외)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4 제2호라목).

▪ 반려동물 건강 관리 방법

▹ 동물의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9조제5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구충)을 하되,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구충제의 효능 지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기적으로 구충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

▪ 반려동물 외출 시 주의사항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

√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제3호).

※ 그 밖에 반려동물에 관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인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해 돌봄 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 지원

▪ 경기도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 중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지원 및 돌봄지원을 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
지원내용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이내) ※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함(반려묘는 동물등록 여부 관계 없음) ※ 미등록 동물은 동물등록 우선 실시 후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순서	(시군) 지원대상 선정 → (1인가구) 동물병원 진료 및 진료비 우선 납부 → (1인가구) 진료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시군) 배려계층 지원금 교부 ※ 시군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동물병원을 선택하여 전화 예약 후 방문

< 출처: 경기도청(www.gg.go.kr) — 분야별 정보 — 경기도민 복지 — 가족·다문화 — 1인가구 지원사업 참조 >

※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1인가구 지원 관련 정보는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